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구합12709 재산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학교법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[redacted]

담당변호사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21. 4. 6.

판 결 선 고 2021. 5. 18.

주 문

1. 피고가 2019. 9. 3.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재산세(토지분) 117,239,630원의 부과처분 중 96,976,1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(토지분) 17,306,610원의 부과처분 중 13,253,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고등교육법상 의과대학 부속병원(B병원)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[redacted] 시 [redacted]서구 C 지상 각 구분건물[1]의 대지권자 및 D 대 11508.3㎡의 소유권자이다(이하 원고가 소유한 각 토지를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.

나. 피고는 2019. 9. 3.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0. 1. 15.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41조 제7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토지(이하 '이 사건 쟁점토지[2]'라고 한다) 중 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 지방세법(2019. 12. 3.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,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재산세(토지분) 117,239,630원[3], 지방교육세(토지분) 17,306,610원[4] 합계 134,546,240원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. 11. 21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20. 3. 12.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, 을 제1, 2,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1) E호, F호, G호, H호, I호, J호, K호, L호이다.
2) 이 사건 각 토지에서 [redacted]시 [redacted]서구 D 대 11508.3㎡ 중 486.80㎡가 제외된 부분을 의미한다.
3) 토지분 산출세액 86,533,069원(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 합계 21,933,267,412원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각 세율 적용)과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30,706,569원(앞서 본 과세표준 21,933,267,412원에 세율 0.14% 적용)을 합산한 금액(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이다.
4)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세표준 86,533,069원에 세율 20%를 적용한 금액이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1) 원고의 주장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 중 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,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.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50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해졌는바,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 100분의 50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 세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2) 피고의 주장

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내용, 과세체계,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09. 7. 30.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2조 제5항 각호는 한정적, 열거적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(나)목, 제2항 단서는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취지가 아니라,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나 그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(가)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1.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1)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'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'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'로 규정하되, 다만 그 단서에서 '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[(가)목]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[(나)목]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'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'로 규정하되, 다만 그 단서에서 '제1호 (가)목 및 (나)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'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·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'로 규정하고 있다.

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(가)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토지로서,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, 제1호 단서 (나)목 소정의 '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'에 해당한다.

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·별도합산과세대상·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·별도합산과세대상·종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.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'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'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[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, 제1호 단서 (나)목],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[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(나)목],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, 제1호 단서 (나)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).

2)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2019. 12. 3.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(가), (나)목 및 제2호 단서가 삭제되었고, 개정이유에서 '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·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,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'이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다. 그러나 구 지방세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'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'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고 할 수 없고, 오히려 위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3)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 100분의 50 관련 부분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루어져서 위법하다.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,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2. 표 중 각 '청구에 따른 정당한 세액'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(토지분) 96,976,100원[5], 지방교육세(토지분) 13,253,910원인바,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5) 토지분 산출세액 66,269,526원과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30,706,569원을 합산한 금액이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별지1.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0. 1. 15.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)

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(한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)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.

1.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,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.

제179조(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)

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.

■ 구 지방세법(2019. 12. 3.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06조(과세대상의 구분 등)

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.

1. 종합합산과세대상: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가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
나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

2. 별도합산과세대상: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. 다만,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가.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

나. 차고용 토지, 보세창고용 토지, 시험·연구·검사용 토지,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(공지상태)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다. 철거·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

3. 분리과세대상: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·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

가. 공장용지·전·답·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나.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

다.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라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바. 에너지·자원의 공급 및 방송·통신·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사.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아.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,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제110조(과세표준)

①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1.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

제111조(세율)

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1. 토지

가. 종합합산과세대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과세표준	세 율
5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2
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+5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
1억원 초과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

나. 별도합산과세대상

과세표준	세 율
2억원 이하	1,000분의 2
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
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
다. 분리과세대상 1)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 및 임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0.7 2)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) 그 밖의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

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"이라 한다)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2.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.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
제113조(세율적용)

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.

1. 종합합산과세대상: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.
2. 별도합산과세대상: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.
3. 분리과세대상: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제151조(과세표준과 세율)

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6.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(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20.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별지2.

표

1-1.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비교표(지역별)-토지분

(단위: 원)

세목	항목	구분	처분청 고지분				청구에 따른 정당한 세액				차이금액	비고
			종합합산토지	별도합산토지	분리과세	합계	종합합산토지	별도합산토지	분리과세	합계		
재산세	토지 일반분	토지 과세표준(*1)	-	21,933,267,412	-	21,933,267,412	-	11,801,495,706	10,131,771,706	21,933,267,412		
		세율	각 합산토지별로 세율 적용				각 합산토지별로 세율 적용					
		토지 산출세액	-	86,533,069	-	86,533,069	-	46,005,983	20,263,543	66,269,526	20,263,543	
	도시 지역분	도시지역분 과세표준	0	21,933,267,412	-	21,933,267,412	0	11,801,495,706	10,131,771,706	21,933,267,412		
		세율	0.14%				0.14%					
		도시지역분 산출세액	0	30,706,569	-	30,706,569	0	16,522,089	14,184,480	30,706,569	-	
	합계					117,239,630				96,976,100	20,263,530	
지방교육세		지방교육세 과표	-	86,533,069	-	86,533,069	-	46,005,983	20,263,543	66,269,526		
		세율	20%				20%					
		지방교육세 산출세액	-	17,306,610	-	17,306,610	-	9,201,190	4,052,720	13,253,910	4,052,700	
총합계						134,546,240				110,230,010	24,316,230	

(*1) 상세내역은 1-2 참고

1-2. 감면후 공시기준 비교표

순번	행정동	지번	도시지역분	용·호수	공시지가 ①	현황면적 ②	경감비율 ③	공정시장가액비율 ④	처분청 고지내역						청구에 따른 정당한 세액						
									재산세 토지분				도시 지역분	지방교육세	재산세 토지분				도시 지역분	지방교육세	
									과세분 토지(㎡)	분류	과세표준 ⑤ (① X ② X ③ X ④) X 1/㎡	산출세액 ⑥ (⑤ X 세율)	산출세액 ⑦ (⑥중 도시지역분 X 0.14%)	산출세액 ⑧ (⑥ X 20%)	과세분 토지(㎡)	분류	과세표준⑨	산출세액 ⑩	산출세액 ⑪ (⑨ X 0.14%)	산출세액 ⑫ (⑨ X 20%)	
일산																					
1			0		6,784,000	139.76	50%	70%	69.88	별도합산	331,846,144				34.94	별도합산	165,923,072				
															34.94	분리과세	165,923,072				
2			0		6,784,000	55.32	50%	70%	27.66	별도합산	131,351,808				13.83	별도합산	65,675,904				
															13.83	분리과세	65,675,904				
3			0		6,784,000	37.14	50%	70%	18.57	별도합산	88,185,216				9.29	별도합산	44,092,608				
															9.29	분리과세	44,092,608				
4			0		6,784,000	54.56	50%	70%	27.28	별도합산	129,547,264				13.64	별도합산	64,773,632				
															13.64	분리과세	64,773,632				
5			0		6,784,000	95.90	50%	70%	47.95	별도합산	227,704,960				23.98	별도합산	113,852,480				
															23.98	분리과세	113,852,480				
6			0		6,784,000	98.12	50%	70%	49.06	별도합산	232,976,128				24.53	별도합산	116,488,064				
															24.53	분리과세	116,488,064				
7			0		6,784,000	38.12	50%	70%	19.06	별도합산	90,512,128				9.53	별도합산	45,256,064				
															9.53	분리과세	45,256,064				
8			0		6,784,000	54.56	50%	70%	27.28	별도합산	129,547,264				13.64	별도합산	64,773,632				
															13.64	분리과세	64,773,632				
9			0		4,900,000	11,021.5	50%	70%	5,510.75	별도합산	13,901,872,500				2,755.38	별도합산	9,450,936,250				
															2,755.38	분리과세	9,450,936,250				
10			0		4,900,000	486.80	0%	70%	486.80	별도합산	1,669,724,000				243.40	별도합산	834,862,000				
									0.00						243.40	별도합산	834,862,000				
									6,284㎡	별도합산	21,933,267,412	86,533,069			3,386㎡	별도합산	11,801,495,706	46,005,983			
									㎡	종합합산	-	-			㎡	종합합산	-	-			
									㎡	분리과세	-	-			2,899㎡	분리과세	10,131,771,706	20,263,543			
									6,284㎡	합계	21,933,267,412	86,533,069	30,706,569	17,306,610	6,284㎡	합계	21,933,267,412	66,269,526	30,706,569	13,253,910	

끝.